한번 신청으로 출원인 및 등록권자의 정보 일괄변경

출원인코드 정보변경으로 출원인과 등록권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가능

특허청은2008. 1. 1부터출원인또는등록권리자 등이특허, 상표, 디자인의등록원부와출원서의 주소등을일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출원인또는등록권리자의편의를위해한번의신청만으로가능하도록할계획이다.

현재출원, 심사및심판단계는출원인코드의정보변경으로출원인의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이일괄변경되고있으나, 등록원부상의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변경하기위해서는특허 · 상표 · 디자인의각 권리별등록건에대하여각각변경신청서를작성하여 제출하고있다.

즉, 등록원부상의정보를변경하여도출원서상의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의정보는변경되지않고, 출원서상의정보를변경하여도등록원부상의정보와연계되어변경되지않아출원인및등록권리자에게불편을주고있다.

이에따라, 특허등록령시행규칙등의개정및전산시스템의개발을통하여2008. 1. 1부터는고객이특허청에특허등의출원또는등록시에발급받은출원인코드의정보를변경하기만하면특허청에출원된모든출원서와등록원부(2008. 1. 1이후등록된등록원부)상의주소등이일괄적으로변경되도록할계획이다.

또한, 2008. 1. 1 이전에등록된등록원부에기재된권리자의주소등에대한정보에대하여일괄적으로주소등이변경되기를희망하는경우에는, 특허권자가통합관리신청을하는경우에전등록원부도일괄하여변경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특허청, 상표법 영문 해설집 발간 등을 통하여 국내 지재권 법과 제도에 대한 국외홍보 강화

국내 상표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영문 해설서 발간

특허청은우리나라의지재권법령과제도에대한국외홍보를강화하고외국인들의국내출원을안내하기위하여상표법영문해설집을발간하였다.

상표법영문해설집은국내상표법의목적, 상표권, 보호대상, 상표등록요건, 상표출원 · 심사 · 등록절차, 심판및소송절차등국내상표법과제도전반에관한내용을총망라하고있다. 동해설집은특허청영문홈페이지에게재하여일반인들과외국인들이널리활용할수 있도록할것이다.

제공 특허청